

## 【서식 10】

# 영양사현장실습 기관 연계 학생 서약서

학번 \_\_\_\_\_ 이름 \_\_\_\_\_ (이하 “실습생”이라 한다)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영양사현장실습생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,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제 1조(현장실습의 의의)

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 제 22조에 따라 실습기관의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### 제 2조(실습관련 사항)

실습인원 및 실습기관, 실습수행 장소 등 실습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와 관련하여 “실습생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 “실습생”이 개인 사유로 실습기관을 배정 받은 후 변경 및 취소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포함한 1년간은 실습이 불가하다.

① “실습기관”의 운영상황에 따라 “실습생”의 실습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다. 이 경우 “실습생”은 실습 가능한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해야 하며, “대학”은 실습신청서 제출기한 내 실습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실습은 “대학”이 정한 기한 내 수행해야 한다.

② “실습생”은 실습 전 “실습기관”이 요구하는 보건증을 포함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“실습기관” 및 “대학”은 실습을 불허할 수 있다.

③ 실습기간은 실습신청서에 기록한 날짜로 하며 실습시간은 최대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“실습기관”의 운영상황에 따라 실습 일별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될 수 있다.

### 제 3조(실습생의 의무)

“실습생”은 실습기간 동안 “실습기관”의 규정을 준수하여 영양사현장실습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 “실습기관” 및 “대학”은 “실습생”이 실습기관이나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, 현장실습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“실습생”의 실습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 4조(학교의 의무)

“대학”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며, 현장실습생을 모집·선발하며, “실습생”에게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.

202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실 습 신 청 자 \_\_\_\_\_(서명 또는 인)